

울산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1가단105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운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2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130,949,917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제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소외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B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대출은행 (대출과목)	보증기한
1차 보증	2016. 4. 28.	630,000,000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017. 4. 27. (2019. 9. 27.까지 연장)
2차 보증	2017. 3. 30.	598,500,000원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018. 3. 29. (2019. 9. 27.까지 연장)
3차 보증	2017. 3. 30.	270,000,000원	E은행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2018. 3. 29. (2019. 9. 27.까지 연장)

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8%)에 의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채권보전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에 기하여, ① 2016. 4.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00,000,000원을, ② 2017. 3. 3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65,000,000원을, ③ 2017. 4. 12. E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라. 그런데 2019. 9. 27. 소외 회사의 원금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2. 30. 중소기업은행에게 합계 1,112,668,745원(= 원금 합계 1,092,000,000원 + 이자 합계 20,668,745원)을, 2020. 4. 29. E은행에게 합계 247,473,155원(= 원금 240,000,000원 + 이자 7,473,15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마. 그 밖에 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합하면, 원고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으로 소외 회사 및 B에 대하여 1,373,323,968원 및 그 중 원금 1,360,141,9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바. 한편, B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5. 27.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9. 6. 3.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297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5. 27.에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각 신용보증약정이 2016. 4. 28.부터 2017. 3. 30.까지 사이에 각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네 달 뒤인 2019. 9. 27.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는 2019. 7.경 원청업체인 F와 사이에 납품가액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2,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2019. 8. 12.경부터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2019. 8. 26.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각 연체하기 시작한 사실,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이미 2018년에 순손실 234,873,000원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적용 법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수인의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특정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에 따라 사해행위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G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은 시가 399,187,1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채권자에게 합계 1,660,599,9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은 피고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이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피고로부터 돈을 추가로 융통받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2018. 4. 17. 20,000,000원을, 2018. 4. 30.

120,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2019. 5.경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추가로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라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 등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의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데,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하여 진행된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이 2021. 11. 11.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30,949,91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에 앞서

2021. 10. 22. 피고의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울산지방법원

2021카단15684)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B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금 130,949,917원의 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제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홍

목

목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대 320㎡

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H

[도로명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I

일반목구조 징크패널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77.49㎡

2층 48.42㎡. 끝.

